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장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원장 직무대행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직무대행자도 등기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원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1) 원장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원장 직무대행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원장 직무대행자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원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① 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정관에 따른 원장 직무대행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직무대행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 부설 기관 및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직무대행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조”를 “제4조 및 제4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4조의2(원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① 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정관에 따른 원장 직무대행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직무대행자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 부설기관 및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직무대행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4조의2-----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4조 및 제4조의2-----

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연 락 처	(044) 200 - 5241